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전문가 참여제도 활용 실태*

이 미 선†

동양대학교 경찰범죄심리학과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활용 실태를 확인하였다. 총 670건의 지적장애 성폭력 사건 하급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건 중 97.5%는 1개 이상의 전문가 의견서가 재판 기록에 포함되어 있었다. 대부분 사건에서 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서(91%)가 존재하였으며, 이외 의사 소견서(41.1%), 진술조력인 의견서(36%), 전문심리위원 의견서(9.5%)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술 신빙성 판단이 쟁점이 된 180건의 사건 중 80건(44.4%)에서 법원은 진술신빙성 판단의 근거로 진술분석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 내용을 판결문에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이거나, 유죄 판결 시 진술분석 의견서를 인용하는 빈도가 더 높았다. 인용된 내용을 살펴보면 증거기반내용분석(CBCA)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피해자의 심리상태, 진술오염 가능성, 인지적 특성에 대한 의견서의 내용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판결문에 제시되었다. 진술신빙성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와 법원의 판단은 1건의 제외한 79건에서 일치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전문가 의견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지적장애인, 지적장애인 성폭력, 진술 신빙성, 전문가 의견조회, 판결문 분석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8027707).

† 교신저자: 이미선, 동양대학교 경찰범죄심리학과 조교수,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로 145 다산관 5205,
E-mail: msy23@dyu.ac.kr

지적장애인은 성범죄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Sobsey, 1988),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Clare & Murphy, 2001; Sobey & Doe, 1991; Bryen, 2002). 특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부재하여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유무죄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지적 장애는 기억력과 인지적 능력의 제한을 수반하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진술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Kail, 1990; Henry & Gudjonsson, 1999). 이에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 피의자의 기소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더 낮은 경향이 있으며(Clare & Murphy, 2001; Sobey & Doe, 1991), 피고인에 대한 무죄 선고율은 비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의 피고인의 무죄 선고율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선, 2020a). 우리나라는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사실판단을 위하여 다양한 법률적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아동, 장애인과 같이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술조력인 제도를 실시하여 피해자와 수사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조정하고 있으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사건과 피해자 진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전문가 참여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가능한 이차 피해를 방지하고 취약한 피해자의 진술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진술 신빙성 판단을 통해 실제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금까지 전문가 참여제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 판결문을 분석하여 전문가

참여 실태를 확인하고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을 위해 작성된 진술분석 의견서의 법정 활용을 검토 하였다.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

지적 장애인 여성은 비장애 또는 다른 장애를 갖은 여성에 비해 더 빈번하게 성폭력 피해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피해의 심각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Sobsey & Varnhagen 1991; Sullivan Brookhauser, Scanlan, Knutson, & Schulte, 1991). 성폭력 피해율은 연구에 따라 다르게 추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적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일생에 걸쳐 적어도 1.5배에서 5배 더 많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obsey & Varnhagen 1991). 지적 장애인 대상 성폭력은 신체적 학대가 동반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비장애인 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으며(Sullivan et al., 1991), 대개 성학대는 아동기에 시작되어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되며 여러 명의 가해자에게 다른 시점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estcott, 1993).

지적장애는 본질적으로 기억력 결핍과 관련되어 있으며(Kail, 1990), 지적장애인들은 높은 피암시성으로 인하여 사후 사건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주어지는 경우 이를 비판 없이 수용하여 사건에 대한 왜곡된 진술을 만들어내기도 한다(Ceci & Bruck, 1993; Ternes & Yuile, 2008). 따라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진술 신빙성은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법적 판단의 핵심이 된다(김정혜, 2015; 이미선, 2020a).

전문가 참여제도

우리나라는 아동과 장애인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차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법률적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신뢰관계자 동석 및 진술조력인 제도는 대표적인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다. 신뢰관계자는 피해자의 직계 친족, 배우자,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교육담당자와 같이 피해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의 사람으로(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8조의4), 수사 과정에서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동석하도록 하고 있다(형소법 제244조의5). 반면 진술조력인은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수사면담에 참여하게 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수사관과 법관의 질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도와주며,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피해자와 면담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 상태 및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하여 진술조력인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수사가 아동의 언어와 이해수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진술조력인의선정등에 관한규칙’에 따르면(법무부령 제998호, 2021. 1. 21 일부개정), 진술조력인은 아동, 장애인의 심리, 의사소통에 관한 전문 지식과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제4조), 법무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증이 부여되며(제5조), 이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령에 따라 조력인을 선정하게 된다(제13조). 다만 조력인은 의사소통 중개과정에서 검사 또는 경찰관의 질문의 취지를 피해

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이 바뀌지 않은 범위에서 질문을 전달하는 것이지(제18조의1), 피해자의 진술에 개입하거나, 진술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제18조의5). 추후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능력이나 표현 능력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한다(제21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기 위한 신뢰관계자 동석 및 진술조력인 제도 이외, 피해자가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전문가로부터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 심리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 진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이에, 경찰에서는 2010부터 진술분석전문가 제도를 실시하여 피해자 진술에 대한 의견을 조회 하고 있다(박노섭, 조은경, 이미션, 2013). 진술분석 전문가들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아동학, 특수교육학 등 아동과 장애인 관련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사람에 한하여 선발하며,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한하여 진술분석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¹⁾ 진술분석 전문가는 아동·장애인 피해자의 수사면담을 참관하거나 수사면담 녹취록을 검토하여 아동의 인지적 특성, 수사면담의 적절성, 피해자 진술에 대한 내용분석(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CBCA), 그리고 허위 고소 동기 등을 검토하여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이미션 2020b). 비록 피해자

1) 경찰청 2020 진술분석 전문가 선발공고 참고.

진술 신빙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조회는 경찰, 검찰, 법원²⁾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찰 수사단계의 진술분석 의견서가 가장 대표적으로 현재 백여명의 진술분석관들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다(김범준, 이수정, 이지혜, 권현정, 양미정, 2016).

연구 목적

법원은 아동 장애인 등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에서 사실 판단을 판단하고 이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전문가 참여제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 재판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활용 실태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 하급심 판결문을 분석하여 (1) 전문가 의견서 작성 빈도와 (2) 의견서 종류 및 판결문에 인용 여부를 검토하여 재판에서 전문가 의견 조회 제도 활용에 대한 탐색적 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전문가 의견 중 진술신빙성 판단이 법원의 판단의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검사 및 판사는 경찰청 아동·장애인 진술분석관 제도가 아동과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으며, 유무죄 판단에 기여한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종선, 2011). 기존 연구는 25명이라는 적은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이므로 해당 내용을 전체 형사사법기관 전문가의 인식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진술분석 의견서가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지금까지 진술분석 의견서가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가 판결문에 인용된 빈도를 파악하고, (4) 사건의 특성에 따른 인용빈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5) 진술신빙성 판단에 있어 진술분석 전문가와 법관 판단의 일치도를 확인한다.

방 법

연구 절차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전문가 의견 활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하급심 판결문 분석을 실시하였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전국 13개 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사건 중 이미선(2020a)의 연구에서 수집된 716건의 사건의 재판기록을 재검토 하여 ‘증거목록’이 포함된 670건을 따로 선별하였다. 670건의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 피해자의 수는 645명(96.3%), 남성 피해자 22명(3.3%)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6.41세(표준편차 = 12.23)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장애등급은 지적장애 1급 43명(6.8%), 2급 268명(42.5%), 3급 310명(49.1%)이

2) 2008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전문심리위원제도를 도입하였다. 형사사법전문가들은 모든 영역에서 전문적 지식을 갖출 수 없으며, 소송관계가 절차과정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또는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형사소송법 제279조 1항, 2항).

표 1. 사건 및 피해자 특성

	변인	빈도	(%)
범죄유형	준강간	67	(10.0)
	강간	105	(15.7)
	강제추행	321	(47.9)
	위력/위계 간음	124	(18.5)
	아동 청소년 간음	21	(3.1)
	기타 성폭력	32	(4.8)
재판결과	무죄	41	(6.1)
	징역형(실형)	368	(54.9)
	징역형(집행유예)	241	(36.0)
성별	기타	20	(3.0)
	여성	645	(96.3)
	남성	22	(3.3)
연령	미확인	3	(0.4)
	13세미만	36	(5.4)
	13~19세	198	(29.6)
장애등급	20세 이상	436	(65.1)
	1급	43	(6.8)
	2급	268	(42.5)
	3급	310	(49.1)
	기타	10	(1.6)

었다. 죄명은 강제추행이 321건(47.9%)로 가장 많았으며, 위력/위계 간음 124건(18.5%), 강간 105건(15.7%), 준강간 67건(10.0%), 아동, 청소년 간음 21건(3.1%) 순으로 나타났다.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 징역형(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368건(54.9%)으로 가장 많았으며, 징역형(집행유예) 241건(36.0%), 무죄 41건(6.1) 등이었다.

증거목록 분석

본 연구에서는 증거목록을 검토하여 전문가

의견서 존재 여부를 코딩하였다. 증거목록은 형사공판조서의 내용 중 증거조사부분을 분리하여 목록화한 자료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기관 및 법원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형사공판조사 중 증거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 제1조). 주로 피의자신문 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 감정서, 진술서 등 목록이 기재되어 있다.

재판에 사용된 전문가 의견서 종류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100여건의 의견서 목록을 검토하여 증거목록에 기재된 모든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였다. 전문가 의견서는 작성자에 따라 구분하면 (1) 진술분석 전문가, (2) 진술조력인, (3) 의사(산부인과), (5) 의사(정신건강의학 등), (6) 전문심리위원(심리학자)으로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전문가 의견은 아니지만, (7) 법과학 감정서(예: DNA 감정서 등)가 존재하였다. 이에, 7개의 전문가 의견서 범주를 구성하였으며, 전체 670건의 증거목록을 검토하여 해당 사건에 전문가 의견서의 존재 여부를 중복 코딩하였다.

판결문 분석

전문가 의견서가 법적판단에 활용 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전문가 의견서의 판결문 인용여부를 확인하였다. 인용 여부는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고려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판결문에 해당 의견서에 대한 언급된 경우 ‘존재’로, 해당 의견서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경우 ‘부재’로 판단하였다.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의 활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사건 중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을 위하여 우선 30개의 판결문에 진술분석 전문가의 의견서가 인

용된 부분을 모두 수집하였다. 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략 10개 항목으로 구분되었다(예: 진술 분석(CBCA) 결과, 피해자의 심리상태, 진술오염가능성, 피해자의 인지적 특성, 피해자의 언어/의사소통 특성, 피해자의 행동, 조사과정, 허위고소 동기 받고과정, 기타). 이에, 10개 항목에 대하여 개별 항목의 존재 유무에 대해 중복 코딩하였다. 마지막으로 진술 신빙성에 대한 (3) 진술 분석 전문가의 판단(신빙성 존재/부재) 및 (4) 법관의 판단(신빙성 존재/부재)을 확인하였다. 신빙성 존/부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 내용을 읽고 전문가 및 법관이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의견서가 작성되었다면 ‘신빙성 존재’하는 것으로 코딩하였으며, 반대로 피해자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부재하는 취지로 작성된 경우 ‘신빙성 부재’하는 것으로 코딩하였다.

코딩

증거목록 및 판결문 분석은 두 명의 평가자에 의해 실시되었다. 두 명의 평가자는 기존에 판결문 분석 연구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판결문 구조 및 구성에 대한 지식이 존재했다. 증거목록 분석 및 판결문 분석에 대한 평가자간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총 30건의 동일한 사건에 대해 두 명의 평가자가 각각 분석을 실시하였다. 증거목록에서 전문가 의견서 종류(7개 범주)의 존재 유무에 대한 두 평가자의 분석은 100% 일치하였으며, 전문가 의견서(7개 범주)가 판결문에 인용되었는지 유무($Kappa = .848, p < .001$) 및 판결문에 인용된 진술분석 의견서 내용분석(10항목)의 유무에 판단($Kappa = .810, p < .001$)에 있어 두 명의 평가자간에 높은 수준의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전문가 및 법관의 신빙성 판단 신

빙성에 대한 두 평가자의 평가는 100% 일치하였다. 평가자간 일치도 분석을 위해 실시한 사건에서 두 평가자간 불일치한 내용은 다시 연구자와 평가자들이 함께 검토하여 수정하였다. 이 후 두 명의 평가자는 670건의 사례 중 평가자간 일치도 확인을 위해 평가된 30건을 제외 한 640건에 대하여 각 각 320건씩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전문가 참여 현황

전문가 의견서 활용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활용된 의견서 개수에 대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평균 1.78개(표준편차 = .89)의 전문가 의견서가 작성된 것을 확인되었다. 전문가 의견서의 수가 1개 또는 2개이었던 경우는 각각 269건(40.1%), 265건(39.6%)으로 전체 사건의 약 80%를 차지했다. 이외, 3개의 의견서가 활용된 사건은 88건(13.1%), 4개 29건(4.3%)이었으며, 5개가 포함된

표 2.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활용된 의견서 개수

개수	빈도	(%)
없음	17	(2.5)
1개	269	(40.1)
2개	265	(39.6)
3개	88	(13.1)
4개	29	(4.3)
5개	2	(0.3)
총계	670	(100.0)

표 3. 의견서 작성 전문가 빈도(%)

전문가 집단	의견서 존재		판결문			
			인용		미인용	
진술분석 전문가	614	(91.1)	113	(18.4)	501	(81.6)
진술조력인	242	(36.0)	25	(10.3)	217	(89.7)
의사(산부인과)	153	(22.7)	18	(11.8)	135	(88.2)
의사(정신의학과 등)	117	(17.4)	21	(17.9)	96	(82.1)
법원전문심리위원(심리학자)	64	(9.5)	11	(17.2)	53	(7.4)
사회복지사	6	(0.9)	1	(16.7)	5	(83.3)
법과학 감정서	314	(46.7)	12	(3.82)	302	(96.17)

주. 전문가 의견서 존재 여부는 중복 코딩하였음. ‘의견서 존재’ 항목은 674건 중 해당 전문가 집단이 작성한 의견서가 존재했던 빈도 및 비율임. ‘판결문 인용’은 전문가 의견서가 존재했던 사건 중 판결문에 전문가 의견서 내용이 인용 또는 미인용된 빈도 및 비율을 의미함.

사건도 2건(0.3%) 존재하였다. 반면 증거목록 상 전문가 의견서가 한 건도 포함되지 않은 사건은 17건(2.5%)이었다.

작성된 전문가 의견서의 종류를 확인한 결과, 진술분석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가 포함되었던 사건은 614건(91.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후 진술조력인 의견서($n = 242, 36.0\%$), 산부인과 의사 의견서($n = 153, 22.7\%$), 그 외 의학 전문가(정신의학과 등) 의견서($n = 117, 17.4\%$), 전문심리위원(심리학자) 의견서($n = 64, 9.5\%$), 사회복지사 의견서($n = 6, 0.9\%$)순이었다. 추가적으로 법과학 감정서가 포함된 사건은 전체 314건(46.7%)이었다. 법과학 감정서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DNA 감정 의견서가 144건(20.1%)로 가장 많았으며, 거짓말탐지 의견서가 포함된 사건은 99건(13.8%), 통신 분석 84건(11.7%), 심리생리 검사 19건(2.7%), 기타 국과수 감정 결과서 14건(2.0%)이었다.

전문가 의견서가 작성된 경우 판결문에 의

견서 내용이 인용되었는지에 대한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진술분석관 의견서가 판결문에 인용된 사례는 614건 중 113건(18.4%)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인용되었다. 정신의학과 의사와 법원전문심리위원(심리학자)이 작성한 의견서가 판결문에 인용된 비율은 각 각 21건(17.9%), 11건(17.2%)이었다. 이외, 산부인과 전문의 의견서 18건(11.8%), 진술조력인 의견서 25건(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술신빙성 판단을 위한 전문가 활용

사건특성에 따라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인용 여부

진술신빙성이 사건의 쟁점에 된 사건에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의 활용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재판에서 진술신빙성이 쟁점이 되었는지 여부는 이미션(2020a)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670건 중 180건의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 시 쟁점화된 사건으로 구분되었다. 180건 중 경찰청 소속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내용이 판결문에 인용된 사례는 80건 (44.4%)이었으며, 미인용 된 사례는 100건 (55.6%)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의 특성, 범죄특성, 범죄유형 및 재판 결과에 따라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인용

여부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법관은 재판결과가 무죄($n = 3, 20\%$)보다 유죄($n = 77, 46.7\%$) 판결 시 더 높은 비율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를 인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1, n = 180) = 3.960, p = .040$. 피해자 연령이 13세 미만인 경우 진술분석관 의견서 내용을 인

표 4. 사건특성에 따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인용 여부 빈도(%)

	유형	n	판결문 인용여부		χ^2	df	p
			인용	미인용			
장애등급	1급	11	3 (27.3)	8 (72.7)	4.057	2	.132
	2급	69	37 (53.6)	32 (46.4)			
	3급	88	36 (40.9)	42 (59.1)			
	총계	168	76 (45.2)	92 (54.8)			
성별	남성	8	1 (12.5)	7 (87.5)	3.51	1	.061
	여성	171	79 (46.2)	92 (53.8)			
	총계	179	80 (44.7)	99 (55.3)			
연령	13세 미만	15	10 (66.7)	5 (33.3)	7.539	2	.023
	13~19세	56	30 (53.6)	26 (46.4)			
	20세 이상	109	40 (36.7)	69 (63.3)			
	총계	180	80 (44.4)	100 (55.6)			
범죄유형	준강간	23	9 (39.1)	14 (60.9)	6.225	5	.285
	강간	27	13 (48.1)	14 (51.9)			
	강제추행	82	40 (48.8)	42 (51.2)			
	위력/위계 간음	32	11 (34.4)	21 (65.6)			
	아동청소년간음	5	4 (80.0)	1 (20.0)			
	기타	11	3 (27.3)	8 (72.7)			
	총계	180	80 (44.4)	100 (55.6)			
재판결과	무죄	15	3 (20.0)	12 (80.0)	3.960	1	.040
	유죄	165	77 (46.7)	88 (53.3)			
	총계	180	80 (44.4)	100 (55.6)			

주. 진술신빙성이 쟁점이 된 180건의 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임.

용한 사례가 66.7%이었으며, 13-19세인 경우 53.6%, 20세 이상인 경우 인용된 비율은 44.4%로 연령이 13세 미만인 경우 다른 연령에 비해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인용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2, n = 180) = 7.539, p = .023$. 반면 성별($\chi^2(1, n = 179) = 3.511, p = .061$)과 장애등급($\chi^2(2, n = 168) = 4.057, p = .132$), 범죄유형($\chi^2(5, n = 180) = 6.225, p = .285$)은 전문가 의견서 인용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표 4 참고).

판결문 내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인용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내용이 판결문에 인용된 경우 법관은 구체적으로 의견서의 어떠한 내용을 참고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판결문에 인용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내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CBCA 분석 결과를 직접적으로 인용한 사례가 59건(73.8%)으로 가장 높았으며, 피해자의 심리상태에 대한 의견서 내용을 인용한 사례가 16건(20.0%), 진술오염/왜곡 가능성과 관련하여 의견서 내용을 언급한 경우가 15건(18.8%), 의견서 내용 중 피해자의 인지적 특성에 대한 내용을 인용한 경우가 11건(13.8%)로 나타났다. 이외, 피해자의 행동, 언어/의사소통 특성에 대한 의견서 내용을 인용한 경우가 각각 7건(8.8%)이었으며, 이외 조사과정, 허위고소동기, 발고과정에

표 5. 판결문에 인용된 전문가 의견에 대한 내용 분석

인용된 내용		
진술분석(CBCA) 준거	59	(73.8)
피해자의 심리상태	16	(20.0)
진술오염/왜곡 가능성	15	(18.8)
인지적 특성	11	(13.8)
언어/의사소통 특성	7	(8.8)
피해자의 행동	7	(8.8)
조사과정	6	(7.5)
허위고소동기	2	(2.5)
발고과정	2	(2.5)
기타	2	(2.5)

대한 의견서 내용이 언급되었다(표 5 참고).

진술 분석관과 법관의 진술 신빙성 판단의 일치도

진술분석 의견서가 인용이 되었던 80건의 사건에서 진술분석관과 법관의 진술신빙성에 대한 판단의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진술분석관의 경우 80건의 사건 중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이 79건(98.8%)이었으며,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건이 1건(1.2%)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관의 경우 ‘신빙성 있음’ 78건

표 6. 진술신빙성에 대한 진술분석전문가와 법관의 판단 일치도 빈도(%)

진술분석 전문가	n(%)	법관			
		신빙성 있음		신빙성 없음	
신빙성 있음	79 (98.8)	78	(97.5)	1	(1.3)
신빙성 없음	1(1.3)	0	(0.0)	1	(1.3)
총계	80 (100.0)	78	(97.5)	2	(2.5)

(97.5%), ‘신빙성 없음’ 2건(2.5%)으로 나타났다. 신빙성이 있음 판단에 있어서 진술분석관과 법관의 판단은 모두 동일하였다. 반면 법관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2건의 사건 중 1건은 진술분석관 역시 동일하게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른 한 건은 진술분석관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고).

논 의

우리나라는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문가 참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 재판 기록을 분석하여 전문가 의견 활용 실태를 확인하고, 진술분석 의견서의 법적 활용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장애인 대상 성폭력 수사 및 재판에서 전문가 의견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에서 포함된 사건 중 2.5%만이 전문가 의견서가 사건에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대략 80% 사건에서 1~2개의 전문가 의견서가 작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진술 신빙성 판단을 위해 경찰단계에서 실시된 진술분석 의견서가 포함되었으며, 이외 진술조력인 의견서, 의학적 소견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전문가 의견서가 증거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의견서가 법정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판사가 직접적으로 전문가 의견서 내용 일부를 판결문에 명시하거나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였다면 전문가 의견서가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에, 판결문에 해당 의견서 내용이 인용되었는지 확인한 결과, 진술분석 의견서, 정신의학전문가 의견서, 법원전문심리위원(심리학자) 의견서가 인용된 사례가 대략 17%~18%이었다.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사건에 포함된 법과학 감정서를 살펴보면, DNA 분석 감정서가 포함된 사건은 144건으로 전체 사건의 20%이었으며, 통신 분석 감정서가 포함된 사건은 84건(11.7%)에 불과하였다. 그 외 거짓말 탐지, 심리생리검사 등 모두 진술에 대한 감정결과로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이를 고려할 때, 대부분의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또는 피고인의 진술을 근거로 법적 의사결정이 내려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진술신빙성 판단을 위해 작성된 진술분석 의견서가 실제 법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된 180건의 사건에 대한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중, 80건(44.4%)의 사건에서 법관이 판결문에 진술분석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 내용을 진술신빙성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특히 법관은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연령이 어릴수록 피해자의 인지적, 심리적 특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더 청취하는 경향이 존재하며, 유죄 판결 시 전문가 의견을 인용하는 빈도가 더 높았다. 추가적으로 판결문에 인용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의 내용분석을 살펴보면, 준거기반내용분석(CBCA) 결과가 전체 59건(7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피해자의 심리상태, 진술오염/가능성, 인지적 특성 등에 대한 의견서 내용도 빈번하게 인용되었다. 이

와 같은 결과는 전문가들이 진술분석 의견서 작성 시 단순히 CBCA 분석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인의 인지적 특성 및 동기측면까지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추가된다면 법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은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높이고 검사와 판사의 법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진술신빙성에 대한 진술분석관과 법관의 판단 일치도를 확인한 결과 80건의 사례 중 79건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관과 진술분석 전문가 간 매우 일관된 판단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본 연구는 판결문에 인용된 사례를 분석하여 일치도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높은 일치율은 사실상 선택적 인용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법관은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진술 내용만을 인용하며 반대로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견서를 인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배제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높은 일치도는 재판에서 무죄 비율과도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 포함된 사건의 무죄 비율은 6%로 재판에서 대부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긍정하고 있다. 경찰청 진술분석관들의 의견서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실시된 피해자의 최초 진술을 근거로 작성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재하다고 판단된다면 이전에 기소가 되지 않거나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이에 무죄 판결의 기저율을 고려할 때 법관과 진술분석 전문가의 의견의 높은 일치도는 쉽게 예상될 수 있다. 반면, 진술분석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였으나 의견서에 인용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의 영향이 축

소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제한점은 연구 방법의 한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처음으로 재판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활용 실태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 결과만으로 법적 의사결정 시 전문가 의견이 정확히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론을 낼 수 없다. 또한 본 연구는 재판과정에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의 활용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경찰 수사 및 기소에 있어서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기소 단계에서 진술전문가의 의견의 활용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정혜 (2015). 장애여성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연구: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을 중심으로 (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범준, 이수정, 이지혜, 권현정, 양미정 (2016). 진술분석 의견서 작성 매뉴얼. 경찰청
- 박노섭, 조은경, 이미션 (2013). 성폭력 근절 관련 대책의 개선방안. 경찰청
- 박종선 (2013). 전문가 의견조회의 성과와 발전방안: 판검사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형사법의 심동향 통권 제 41호, 86-117.
- 이미션 (2018).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신빙성 판단에 있어서 평가자간 신뢰도: 진술분석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2(2), 67-83.
- 이미션 (2020a).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 특성과 법원의 판단. 한국심리학회지: 법, 11(2), 211-239

- 이미선 (2020b). 2020 진술분석전문가 신규 양성과정. 경찰청
- 이수정 (2011).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서 경찰단계에서의 전문가 참여가 기소율과 유죄 판결률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학*, 5(1), 111-138.
- Bryen, D. N. (2002). 'End the silence', *Issues in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17(2), 7-17
- Ceci, S. J., & Bruck, M. (1993). Suggestibility of the child witness: A historical review and syn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3(3), 403.
- Clare, I., & Murphy, G. (2001). Witnesses with learning disabilities. *British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29(3), 79-80.
- Henry, L. A., & Gudjonsson, G. H. (1999). Eyewitness memory and suggestibility in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104(6), 491-508.
- Horn, J. L., & Donaldson, G. (1976). On the myth of intellectual decline in adulthood. *American Psychologist*, 31(10), 701.
- Kail, R. (1990). *The development of memory in children*. WH Freeman/Times Books/Henry Holt & Co.
- Sobsey, D. (1994). *Violence and abuse in the liv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end of silent acceptance?*. Paul H Brookes Publishing.
- Sobsey, D., & Doe, T. (1991). Patterns of sexual abuse and assault. *Sexuality and Disability*, 9(3), 243-259.
- Sobsey D. & Varnhagen C. (1991)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 of disabled individuals. In: Child Sexual Abuse: Critical Perspectives on Prevention, Intervention & Treatment (eds C. Bagley & R. J. Thomlinson), pp. 203-216. Wall & Emerson, Toronto.
- Sullivan, P. M., & Knutson, J. F. (2000). Maltreatment and disabilities: A population-based epidemiological study. *Child abuse & neglect*, 24(10), 1257-1273.
- Ternes, M., & Yuille, J. C. (2008). Eyewitness memory and eyewitness identification performance in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21(6), 519-531.
- Westcott, H. (1993). *Abuse of Children and Adults with Disabilities*. London: NSPCC.

1 차원고접수 : 2021. 02. 09.
심사통과접수 : 2021. 02. 23.
최종원고접수 : 2021. 03. 17.

Expert Testimony in Litigation of Sexual Violence against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Mi Sun Yi

Dongyang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he use of expert reports in the investigations and trials of cases of sexual violence against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 total of 670 alleged sexual assault cases against victim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were analyzed. Results showed that 97.5% of the cases included at least one expert report. In most cases(91%), the expert reports of statement validity assessment were included. Additionally, doctor's note (41.1%) from obstetricians and Psychiatrists, intermediary reports(36%), and expert witnesses(psychologists') reports (9.5%) were included. In 80 cases (44.4%) of the 180 cases in which a victim's statement credibility was in question during the trial, judges cited the expert's reports of statement validity assessment as the basis for the judgment on the reliability of the victims' accusation. The frequency of citing the report was higher when the victim was under the age of 13, or when the defendant was found guilty. Regarding the report content, the evaluations of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CBCA) was most frequently cited, while the victim's psychological status, cognitive limitation, as well as possible contamination of victim's account, were also mentioned in the ruling statements. Results showed agreement between experts' statement validity assessments and judges' determinations in 79 cases out of the 80 cases. Finally, this study discussed ways to utilize expert options.

Key words : Intellectual disabilities, sexual violence, inability to resist, sexual sex-determination, analysis of rulings